

제 호

유희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

1.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(임차권자)

성명(명칭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주 소			

2. 농지의 표시

소재지			지 번	지 목	면 적(㎡)	비 고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

3. 대리경작자 지정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 월간)
4. 대리경작자 지정사유	

1. 귀하가 소유하고(임차권을 가지고) 있는 위 목록의 농지는 「농지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희농지에 해당됩니다.
2. 이에 「농지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하여 경작하게 할 것임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※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에 따라 이 예고를 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